경운대학교 전임·박사 후 연구원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운대학교 전임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연구원이라 함은 학사·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, 특정 전문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교내·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임용)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선발하고,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지원자격) 연구원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임연구원 : 연구원은 국내·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 다만, 학사(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)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책임자가 추천한 자도 포함한다.
2. 박사 후 연구원 : 연구원은 국내·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
제5조(재원) 연구원의 급여, 퇴직금,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) 기관부담금 등 일체의 비용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로 부담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의 연구만료일로 하며, 임용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과제의 성격이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구비서류) 연구원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임용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원 근로계약 신청서 1부
2. 이력서 1부
3. 자기소개서 1부
4. 전임연구원 추천서(해당자) 1부
5.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각 1부(외근인의 경우 여권, VISA(입국일자 포함), 외국인등록증 사본)
6. 졸업(학사·석사·박사)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7.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
8. 경력증명서(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) 각 1부
9.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(해당자) 각 1부
10.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각 1부
11.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(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) 1부
12.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

제8조(주관부서) 연구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.

제9조(복무) ① 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.

② 연구원의 복무는 연구원 근로계약서에 준한다.

③ 연구원의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된 출판물에 대한 권리는 대학에 귀속시킨다.

제10조(보고의무) 연구원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수 및 처우) ① 연구원의 보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에서 연구원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연구원의 연구지원시설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.

③ 직무발명보상금(기여율) 지급은 「경운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」을 준용하고 발명 신고서에 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평가하여 지급한다.

제12조(면직) 총장은 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.

1.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2.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
3. 병약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4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5. 연구책임자의 연구비로 연구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3조(증명) 연구원에게는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제1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<2022.12.01.>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